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23. 신종갑 의원 외 6명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6.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신종갑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제정 경위

- 동 조례 제정안은 2023년 5월 23일 신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 취지는 마포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에스지(ESG) 현황

- ESG 경영¹⁾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부분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 즉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임.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탄소중립과 같은 주요 현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²⁾
 -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논의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
 -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석탄, 담배, 핵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환경오염 유발, 인권 침해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기금연금도

1) E(환경 Environment), S (사회 Society),G (지배구조 Governance)

2) 2006년 UN에서 발표한 책임 투자 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을 통해 ESG 이슈의 반영, 정보공개 등이 구체화되며 ESG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기후변화 심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들이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하게 되었음.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등 2022년까지 ESG 관련 투자를 운용하는 기금의 50%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정책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이 생존을 좌우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하여 ESG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보다는 손실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관내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판단됨.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기도 등에서 ESG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등이 제정하였음.

다.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ESG 경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관내 중소기업과 마포구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구청장이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수립,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ESG 경영의 홍보와 교육,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안 제8조는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등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선정과 혜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1조는 구청장이 ESG 경영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라. 검토 결과

-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의 책무,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개별 기업 수준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아직 일반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ESG 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와 더불어 평가기준의 정립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국내에는 도입 초기 단계인 ESG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개별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참고 1

ESG 관련 자치법규 현황

2023년 2월 기준

연 번	지 역 명	조 례 명	제 정 시 기	소 관 부 서
1	경기도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07-19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
2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26	문화경제국 기 업지원과
3	경상북도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03-03	경제산업국 기 업지원과
4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12-30	경제산업국 기 업투자과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07-23	경제창업실 창 업진흥과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2-30	경제국 경제정 책관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11-04	미래문화국 디 지털도시과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01-10	기획경제국 지 역경제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	2022-12-08	기획재정국 기 획예산과
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2022-12-29	경제국 기업지 원과
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11	기업애로 해소지원단
12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1-12-30	경제기획관 기 업지원과
13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2021-12-31	경제통상국 경 제기업과
1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3-02-10	문화경제국 환 경에너지과